

예 산 총 칙

2010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233,261,896	6,997,857
일반회계	213,661,121	6,409,834
특별회계	19,600,775	588,023
기타특별회계	19,600,775	588,023
상수도사업특별회계	3,833,852	115,016
수질개선특별회계	10,371,177	311,135
의료보호특별회계	391,371	11,741
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	2,702,588	81,078
농공지구단지조성특별회계	2,221,706	66,651
기반시설특별회계	80,081	2,402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"해당없음"으로 한다.

제 4 조 계속비 사업의 명세는 "해당없음"으로 한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,920,868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2,600,000천원으로 한다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